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78회 임시회

검토보고서

2025. 8. 28.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5. 8. 14.
- 회부일 : 2025. 8. 18. (의안번호 : 25-103)

2. 제안이유

-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및 구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(안 별지 제7호서식)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에 근거한 용어 정비(안 제 17조) 등

4. 참고사항

○ 관계 법령
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 에 근거한 용어 정비

-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요청

(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-3125호, 2024.02.21.)

- 입법예고: 2025. 6. 12.~7. 2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및 구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1 주요 개정내용

○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(안 별지 제7호서식)

[별지 제7호서식]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'인감증명서' 를 삭제하고 '신분증' 으로 변경

○ 조직 개편사항 반영(안 제17조)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재해보상) ③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재해보상 청구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,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재난관리총괄부서장, <u>디지털재정과장</u> , 주민생활복지과장, 의약과장,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거주지 관할 동장, 권역별 선임동장을 위원으로 한다.	제17조(재해보상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산정책과장, 복지정책과장</u> ----- -----

○ 용어 및 표현 정비(안 제17조 및 별지 제7호서식)

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 제2항에 근거한 용어 수정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재해보상) ① (생 략) 1. 요양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. 장애보상: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.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: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(생 략) ③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재해보상 청구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	제17조(재해보상) ① (생 략) 1. 요양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. 장애보상: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.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: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(현행과 같음) ③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재해보상 청구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

6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요청에 관행적 인감증명 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처리에서는 신분증으로 대체하도록 변경하고 조례 조문 내 표현 오류 및 행정기구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최소한의 개정으로, 법적·행정적 정합성을 높이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